

국 무 총 비 실



국무총리지시 제9호

(73-0105)

1971. 12. 14.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해외인력진출 기본방침

1. 해외인력진출 사업은 1963년 서독의 광부 취업을 계기로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책정되고 국가 이익이 증대됨으로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6. 3. 14. 대통령 각하의 노동청에 대한 해외취업업무 일원화지시가 있은 후 관계부처에서 필요 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67. 3. 10. 직업안정법을 보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계속 발전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일부 직종의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계기로 해외인력진출 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71년도에 조선공의 서독취업자 파견시는 사회적인 물의마저 이르렀습니다.

3. 따라서 금후 해외인력진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인력진출 기본방침을 조정 지시하니 그 시행에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해외인력진출은 국내인력수급 계획상 필요 불가결한 직종과 인원을 제외하고 적극 권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계부처는 이 원칙에 따라 필요 불가결한 직종과 인원에 대한 국내수요조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노동청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해외인력진출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안정법 제 15조에  
의한 국외취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다. 관계부처는 해외노동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다. 이민은 국가경제에 유익한 행위를 하는 자 이외  
에는 계속 권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기업이민의 권장을 위하여  
관계부처는 적극 노력한다. 끝.

수신처: 가 (7-41)

국 무 총 리